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 부서명 : 노인장애인과

○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구분	조치사항				비고
	총건수	시정	개선	권고	
합 계	12	1	5	6	
조치완료	1	0	0	1	
조 치 중	8	1	4	3	
장기검토	3	0	1	2	
조치불가	0	0	0	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추진계획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및 추진계획	완료구분
노 인 장 애 인 과	개 선	194. 1사1경로당 사업 관련 미등록 경로당 연계 검토 ○ 1사1경로당 사업 추진 시 미등록 경로당과의 연계를 통해 지원이 되도록 검토. ○ 미등록 경로당 지원 시 세제 혜택 및 봉사 실적 인정부분도 같이 검토하길 바람.	○ 상공회의소(기업투자과) 및 경북경영자총협회(노동복지과) 대상 1사1경로당 사업 협조 공문 발송 및 방문 협의 중 ○ 기부영수증 발행(경상북도공동모금회)과 봉사시간인정(종합자원봉사센터)은 등록된 시설만 가능하여 기업에서 미등록 경로당 지원 시 공제혜택 및 봉사실적을 받기 위해서는 고유번호증 발급(세무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미등록경로당 및 읍·면·동과 소통·협의를하여 추진하겠음.	조치 중
	권 고	195. 경로당 운영비 상향 검토 ○ 난방비 및 전기료 상승으로 인해 기존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는 냉난방이 어려운 상황임. ○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경로당 운영비 상향을 검토하길 바람.	○ 난방비 부족분 수요조사 및 추가지급. (연1,400천원→1,600천원) * 39개소, 총1,700천원(~6월) ○ 냉방비 증액(연200천원→250천원) 지급. * 419개소, 총104,750천원(~6월) ○ 하반기 난방비 부족분 추가수요조사 및 지급 예정(9월 중)이며, 냉난방비 부족으로 경로당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겠음.	조치 중 9월완료예정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및 추진계획	완료구분
노 인 장 애 인 과	권 고	196. 노후경로당 개보수 적극 추진 ○ 관내 노후화된 경로당이 많아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많음. ○ 정확한 조사 및 예산확보를 통해 노후 경로당 개보수를 적극 추진하길 바랍.	○ 2023년 본예산 경로당 개보수 시설비 150백만원(22년 100백만원), 민간자본 보조 80백만원(22년 40백만원)으로 상향하였으며, ○ 1회 추경 때 시설비 400백만원(증 250백만원), 민간자본보조 100백만원(증 20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음. ○ 향후에도 늘어나는 경로당 개보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 하겠음.	조치완료
	권 고	197. 부지 및 건물 매입을 통한 경로당 건립 추진 ○ 현재 경로당 부지를 시에 기부채납을 해야만 건립이 가능한 상황임. ○ 노령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기부채납을 통한 경로당 건립은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임. ○ 시에서 부지를 매입 후 경로당을 건립할 수 있는 방안 또는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부지 및 건물 매입을 통한 경로당 건립 시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함. ○ 기부채납 절차를 제외하고 부지 및 건물 매입으로 경로당을 확대하는 경우 경로당 신축요구가 증가하여 장기적으로 시 재정 부담 증가가 예상되어, 신중한 검토 필요.	장기검토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및 추진계획	완료구분
노 인 장 애 인 과	개 선	198. 인권지킴이 회의수당 직접 지급 ○ 장애인거주시설 관련 인권지킴이분들의 회의수당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에서 지출되고 있음. ○ 회의수당 부분은 시에서 직접 지원하길 바람.	○ 당초 시설 운영비에서 지출되고 있는 회의 참석 수당을 2024년 본예산에 편성, 시에서 직접 지급하여 시설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활동에 힘쓸 수 있도록 지원 하겠음.	조치중
	개 선	199. 옥계공설묘지 이전 검토 ○ 옥계공설묘지는 40년전 임시로 잠시 사용하도록 주민들 동의를 받았으나 지금까지 사용중. ○ 도심 확장에 따른 이전 절차 준비 바람.	○ 옥계공설묘지 필지는 행정재산으로 매각이나 처분 사유(도시관리계획 변경)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용도폐지 및 이전이 가능함. (묘지 이전이 우선이 아니라 향후 부지 활용 방안이 우선 정해져야 함) ○ 추후 공설묘지를 포함한 인근 지역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 발생 시 공설묘지 이전 및 정비사업을 통해 토지 가치를 높이고, 향후 신공항 배후지로서의 기반 구축 등 그 역할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음.	장기검토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및 추진계획	완료구분
노 인 장 애 인 과	개 선	200.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한 미등록경로당 지원 검토 ○ 기존 등록경로당은 500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현재 전무한 상태임. ○ 노인복지법상 미등록 경로당에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타 시군의 사례를 참고하여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해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람.	○ 노인복지기금의 사용 용도로 노인 여가 시설·경로당 시설관리 운영 및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지원이 가능하므로 미등록경로당 지원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24년부터 매년 발생하는 기금 이자 범위 내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 경기도 안성시(일반회계 지원), 경남 창원시·거창군(노인복지기금 지원) 등 미등록 경로당 지원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지원 대상 범위, 지원 내용(통계목), 지원방법 등 의회와 소통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음. ※ 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기금의 용도) 대상 사업 중 미등록 경로당 물품 지원 추가 조례(안) 개정 추진 중(김정도 의원)	조치중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및 추진계획	완료구분
노 인 장 애 인 과	개 선	201. 민간위탁 의회 동의 철저 ○ 민간위탁 관련 재위탁도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많은 사업들이 의회동의 없이 추진중임. ○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의회동의 및 설명이 부족함. ○ 민간위탁 관련 근거법령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의회동의가 필요없는 사업도 의회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	○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 중인 위탁사업 담당자 및 직원들에게 구미시 민간위탁관리 지침 등 관련 법령 숙지 및 동의 대상 민간위탁사업들은 의회 동의 절차를 진행 하도록 하겠음. ○ 의회 동의 제외 사무도 예산 수립 및 사업추진 시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여 위탁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음.	조치중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및 추진계획	완료구분
노 인 장 애 인 과 (공공시설과)	시 정	202. 경로당 개보수 관련 업무분장 명확화 및 예산 확보 노력 - 노인장애인과는 경로당 개보수 수요 파악 및 현장점검, 공공시설과는 직접 개보수 진행 등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할 필요성 있음. - 경로당 개보수 수요에 비해 관련 예산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길 바랍.	- 공공시설과는 경로당 개보수, 노인장애인과는 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로 업무 분장이 되어 있으며, 향후 부서별 세부분장 사무 개정 시 업무 분장을 명확화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토록 하겠음. - 현재 경로당 개보수 업무가 노인장애인과와 공공시설과 2개 부서에 연관되어 있으므로 협의와 협조를 통해 개보수 사업을 원활히 추진 하도록 하겠음. 2023년 본예산 경로당 개보수 시설비 150백만원(22년 100백만원), 민간자본 보조 80백만원(22년 40백만원)으로 상향 하였으며, 1회 추경 때 시설비 400백만원 (증 250백만원), 민간자본보조 100백만원 (증 20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음. - 향후에도 늘어나는 경로당 개보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 하겠음. 【공공시설과】 의견 - 재배정 및 보조금 형식의 개보수 업무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예산 집행을 위하여 업무분장 관련 부서협의 및 부서별 세부분장 사무개정 시 의견제출을 하도록 하겠음	조치 중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및 추진계획	완료구분
노 인 장 애 인 과	권 고	203. 인권지킴이 실비 지원 검토 회의수당 이외의 교통비 등 실비를 추가 지급하여 고생하는 인권지킴이분들에 대해 성의를 표하길 바람.	현재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에서 인권지킴이 회의 시 참석수당(5만원)만 지급하고 있으나, 24년 본예산 편성 시 회의 참석수당 및 교통비 등 실비를 추가(7만원)하여 시에서 직접 지급도록 하겠음.	조치중
	권 고	204. 장애인단기거주시설(긴급돌봄) 추가 건립 적극 추진 - 관내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은 1개로 수요에 비해 시설은 많이 부족한 실정임. - 장애인단기거주시설(긴급돌봄) 추가 건립을 적극 추진하여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에 힘써 주길 바람.	'22년부터 사업수행 기관 모집을 위한 공모(3차 공모 예정) 및 사회복지시설 전환 등 장애인단기거주시설(긴급돌봄) 설치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나, - 적합한 사업수행기관이 미확보된 상황으로 사회복지 관련 단체 및 복지시설 운영 법인,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 건립토록 하겠음.	조치중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및 추진계획	완료구분
노 인 장 애 인 과	권 고	205. 위탁업체를 통한 수리비 지급 지양 ○ 위탁사업 추진 시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직접 시에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수리비를 위탁업체에 지급하여 수리하는 경우 발생 ○ 위탁사업의 주체는 우리시인 만큼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시에서 직접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	○ 「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조사업자를 지정하여 사업수행기관(보조사업자)에서 직접 시설 보강사업을 위한 업체를 선정,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및 교부를 통해 사업 추진. ○ 부서에서도 목적에 맞게 집행하였는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음.	장기검토